

# 서울특별시 강동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9. 2. 27

행정복지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 및 제출자 : 2019. 2. 11.(월), 박희자 의원 등 9명

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9. 2. 18.(월) (의안번호 제86호)

다. 위원회 상정일자 : 2019. 2. 25.(월), 제260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

## 2. 제안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박희자 의원

나. 제안이유

강동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구성 위원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특별시 강동구협의회 소속 임원을 명시함으로써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1) 위원회 위원 규정 (안 제4조)

## 라. 참고사항

- (1) 관계법령: 「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」
- (2)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(3) 합 의: 총무과(대외협력팀)와 합의되었음
- (4) 기 타
  - 1) 전 문: 별첨
  - 2) 입법예고 (2019. 2. 12. ~ 2. 16.) 결과: 의견없음

## 3. 검토의견

- 남·북한간의 인적·물적교류와 협력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류·협력에 대한 사항을 정한 「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」이 1990년 8월 1일 제정되었으며,
  - 강동구에서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통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제도적 장치로 「서울특별시 강동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 시행하고 있음
-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성현황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, 박희자의원이 대표발의하고, 8명 의원의 공동발의로 제출된 안건임.
- 강동구는 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」 제9조제4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대한 대행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,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특별시 강동구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음.

-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남북간 교류협력 사업 강화, 철도·도로 연결 사업 등 남북간의 상황변화에 따른 통일정책의 자문·건의하는 기능을 수행함
- 따라서 안 제4조의 위원회 구성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특별시 강동구협의회 회장을 명문화 하는 규정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

○ 또한,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직속의 조직이므로 본 조례가 제정·시행되면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활성화 및 통일정책 추진에 있어 강동구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

#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해당 없음

#### 5. 수정안 요지

- 해당 없음

#### 6. 심사결과

- 원안 가결

#### 7. 소수의견의 요지

- 없음

#### 8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